

Q&A
01

타인이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미출판 내용을 자신의 연구에 소개하는 경우



현재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학술 세미나에서 타인이 발표한 연구내용이 자신의 연구 주제와 방향이 유사하다. 타인의 세미나 발표 내용은 아직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가?



교육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는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를 ㉓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㉔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㉕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구자들은 논문을 작성할 때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때 타인이 공식적인 출판 절차에 의해 발표한 학술지 논문이나 저서는 물론이고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의 내용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학술 세미나, 좌담회, 워크숍 등에서 구두 발표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연구 내용이 자신이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출처표기하는 방식은 해당 학술지의 출판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된다.³³⁾

33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8.

Q&A
02

타인의 논문에 실린 표와 그림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는 경우



연구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연구 주제가 유사한 타인의 논문에 실린 표와 그림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연구 개념을 표현하는 모식도(schematic diagram)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타인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는 표로 작성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 표절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표절 여부는 무단으로 활용한 타인 저작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활용한 부분이 원저작자의 핵심 아이디어 및 독창성을 얼마나 침해하였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타인 저작물 중 원저작자의 고유한 아이디어와 독창성이 내재된 그림, 표 등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한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자신의 논문에 타인의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이나 표 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을 추가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수정하여 활용하는 경우이지만, 수정된 해당 그림과 표에는 원저작자의 학술적 기여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학술적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고, 해당 그림과 표가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음을 밝혀주어야 한다. 이는 어떤 연구자의 논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연구 방법이나 논문의 핵심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후 활용하는 경우에도 원 논문에 대해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타인이 고안해낸 사고 구조(생각의 프레임)나 연구 방법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처럼 전적으로 그것을 고안한 타인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표와 그림을 활용할 경우 출처표기를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제시된 표나 그림 상단 제목 부분이나 하단부에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본문에서 출처표기를 한 해당 표와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에서도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인의 저작물 속에 포함된 표나 그림을 그대로가 아닌 자신의 연구의 맥락에 맞게 변형하였다 하더라도 원본에 대한 출처를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취지 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야 한다.³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타인의 독창적인 표현에 한정되며, 특정 도서 등의 창작물에 내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사상 등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한다는 점만으로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3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 2020, p.154.

Q&A
03

공동으로 작성한 연구계획서의 활용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자 A’와 함께 공동으로 작성한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제 선정에 실패하였다. 추후에 그 연구계획서에 기술된 연구 아이디어 및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자 A’가 아닌 ‘연구자 B’와 함께 연구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구자들은 표절의 대상 저작물을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지 논문이나 정식으로 출판된 저서 등으로 좁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출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연구계획서 혹은 연구과제 제안서도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대상이 된다. 연구과제 제안서에는 대부분 연구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 배경,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 연구 아이디어, 연구 방법 등 독창성이 내재되어 있어 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보면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이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연구계획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은 연구제안서라도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대상이 된다.

본 사안의 경우처럼 연구비 지원 대상 과제로 최종 선정되지 않은 이전 연구과제 제안서에서 자신이 학술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새로운 연구과제 제안서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동 연구자 A에 의해 작성된 아이디어, 문장 등을 원저자자인 공동 연구자 A의 승인 및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제안서에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에는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로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본 사안과 유사한 경우로 동료심사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연구제안서나 투고 논문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에 관하여는 합의된 규칙이 없으나,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했다면 어떤 형태든 상황에 맞게 원저자의 학술적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³⁵⁾

35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02.

Q&A
04

해외 국가의 역사, 법규, 정책 등에 관해 소개한 글을 활용하는 경우



온라인 백과사전과 언론 기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특정 국가의 역사, 법규, 기존 정책 등에 관한 글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만약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면 포괄적·개괄적으로 표기해도 되는가?³⁶⁾



특정 국가 및 기관의 제도, 법규, 정책 등은 특정 연구자의 독창적인 학술적 연구내용 및 결과가 아니고, 온라인 백과사전 및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일반 지식에 해당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 지식은 특정 학문 공동체의 범위 안에서만 통용되므로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는 일반 지식이 아닐 수 있어 이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 특정 국가의 국토 면적, 인구, 사건 사고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단순 정보인 경우처럼 누가 정리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하다면 일반적 지식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적절히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저자의 분석이나 전문가적 견해를 가미하여 그것을 재구성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고유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출처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필자의 고유한 견해가 중심이 되는 언론사의 논설, 칼럼 그리고 정부의 공식 견해가 제시된 보도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본 사안의 경우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언론 기고문 등에 들어가 있는 특정 국가 및 기관의 제도, 법규, 정책 등을 자신의 보고서 등에 활용할 때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소개한 저작자의 노력과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일반 지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3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 2020, pp.152-156.

Q&A
05

동일한 연구모형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를 다수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새롭게 고안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사회 현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와 해외의 연구 결과를 분리하여 국내 학술지와 해외 학술지에 각각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가능한가?



중복게재는 일반적으로 이미 게재·출판된 자신의 논문·저서·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기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을 보면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 이미 게재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로. 단, 연속 논문은 제외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로이 작성한 부분에 비해 주(主)가 되어 새로 작성한 해당 연구의 독자성 혹은 학술적 독창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사안에서와 같이 동일한 연구모형을 사용하였지만 연구 대상이 국내와 해외로 다른 경우, 두 논문의 내용상 유사성이 적고 개별 논문으로서의 학술적 가치 및 독자성을 지닌다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때에도 후속 논문에서 이전 논문의 언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 논문에 대해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중복게재의 유형 중 쪼개기 출판(salami publication)이 있는데, 이는 연구수행 후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고의로 여러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한 연구모형에 기반하여 얻은 연구 결과들을 개별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하는 경우, 개별 논문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논문을 분리하여 지나치게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상호 논문에 대해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학문 분야별로,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이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후속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반드시 이전 논문을 언급하여 동료 심사자가 논문 심사 시에 해당 논문들 사이의 유사성 및 학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은 국내 및 국외 논문의 구별과 무관하게 두 개의 논문이 모두 별개의 연구 논문으로서 충분한 학술적 가치가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후속 논문에 선행 논문에서 이미 기술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 논문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³⁷⁾

37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52, 63.

Q&A
06**학술지 논문에 출판된 내용을
학위 논문에 활용하는 경우**

이공계 분야 대학원생으로 현재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박사학위 과정 중에 획득한 연구 결과의 일부를 이미 국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준비 중인 박사학위 논문에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데, 적절한 출처표기 등 선행 절차는 무엇인가?³⁸⁾



최근 국내 대학의 대다수 이공계 분야 학과에서 대학원생의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요건으로 학위 논문 제출 이전에 자신의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저널)에 논문으로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학위과정 중에 획득한 연구 내용의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발표하고 추후 박사학위 논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와 텍스트를 포함한 본인의 연구 내용을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동료 심사자들의 평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므로, 학술지에 발표된 중요한 데이터나 연구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에 다시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내용을 학위 논문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는 그 출처를 적절히 표시하되, 그 방식은 해당 대학의 학위 논문에 관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따라야 한다.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연구 내용을 학위 논문에 다시 활용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³⁹⁾ 예를 들어서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학술지 논문을 활용할 때 학위 논문 작성자가 자신이 해당 학술지 논문에 기여한 데이터 혹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공동 저자의 학술적 기여 부분이 포함된 학술지 논문의 전체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학위 논문에 사용하는 것은 표절과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저자가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가 있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자신의 학위 논문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과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며, 설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 굳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사용한 데이터가 타인에 의해 얻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38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53, 61, 66.

39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37.

Q&A
07

연구과제 보고서의 내용을 학위 및 학술지 논문에 활용하는 경우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획득한 연구 내용이 연구과제 보고서에 포함되어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되었다. 대학원생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획득한 연구 내용을 활용하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는가?⁴⁰⁾



최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획득한 연구 결과가 해당 연구과제의 보고서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이공학 및 의학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연구윤리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특정 연구과제의 결과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연구 결과를 학위 논문 혹은 학술지 논문에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 성과 발표 및 활용에 관한 연구과제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즉,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한 적절한 연구비 사사 표기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학술지 논문에 “이 논문은 000연구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과 같이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과제 수행 중에 얻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연구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자신이 기여한 내용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타인의 연구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자신의 학위 논문에 사용하였다면 표절에 해당하게 된다.⁴¹⁾

지도 교수는 대학원생이 작성한 학위 논문에 기술된 연구 방법, 결과, 해석 및 결론 등을 활용하여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에 지도교수가 학위 논문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게 혹은 이를 요약·발췌하여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할 때, 대학원생이 해당 학술지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고, 그 예로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40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65, 70.

4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p.70.

Q&A
08**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프로시딩 논문의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학술대회에서 프로시딩 형태의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추후에 정규 학술지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가능한가?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학술대회 프로시딩(proceedings)은 정규 학술지 논문과 형식은 매우 유사하지만 한정된 부수만이 출간되고 그 보급 경로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규 학술지 논문과 달리 일반 연구자들이 쉽게 열람하기 어려운 회색 문헌(grey literature)으로 간주되었다. 동료심사를 거쳐서 엄격히 선정하는 프로시딩 논문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프로시딩 논문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정규 학술 논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SCIE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해당 프로시딩에 실린 연구 내용을 그대로 혹은 수정, 보완하여 정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이 매우 발달하여 인문·사회 및 공학 분야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인 프로시딩은 과거와는 달리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통상적인 학술지 논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의 학술대회 프로시딩의 경우와 같이 일부 공학계열에서는 학술대회 프로시딩을 스스로 저널이라고 하고 있다. IEEE 학술대회들은 연구자들의 발표를 접수할 때 ‘Call for abstracts’가 아닌 ‘Call for papers’라고 하며, 많은 경우 엄격한 동료심사 절차를 통해 프로시딩에 실리는 문건을 논문으로 선정하여 출판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PDF 파일의 형태로 내용이 이미 공개된 프로시딩을 활용하여 후속 논문으로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학술지 투고 시에 “본 논문은 다른 매체에 발표된 바가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저자 서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프로시딩으로 발표된 논문을 새로운 학술 논문으로 발표할 때 학술지에 따라서는 특별한 조건을 전제로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IEEE에서는 이전에 발표된 자료의 일부를 새로운 논문에 재사용하는 경우 그 원 논문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새 논문이 과거의 논문에 비해 어떠한 새롭고 중요한 학술적 기여를 할 것인지를 밝혀 편집자의 승인을 받으면 자신의 학술지에 정규 논문(full paper)으로 실어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책은 ‘과거에 발표된 바가 없는 새로운 내용을 실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반하는 것임에도 새 논문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IEEE의 입장이다.⁴²⁾

42 한국과학기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35.

Q&A
09

여러 논문의 내용을 모아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이전에 자신이 학술지에 발표한 여러 논문의 내용을 모아 저서로 발표하고자 한다.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가? 없다면 이를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본 사안은 이전에 발표한 여러 연구 논문의 내용을 모아 독자에게 유의미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서로 출판하는 것이 자기표절 혹은 중복게재에 해당하느냐의 이슈이다. 대다수의 학회나 학술지 출판사에서는 논문의 출판 이후 해당 학회나 학술지에 저작권이 전부 또는 일부 귀속됨을 안내하고 있다. 물론 각 저자들에게도 논문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가 있으나, 전문을 활용한 2차 출판의 경우 연구윤리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와도 관련이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학술지 논문의 출판사 혹은 학회로부터 사전 동의 혹은 저작권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후속 저작물인 저서에 이미 출판된 학술지 논문의 출판 정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연구윤리지침」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 이미 발표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차이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기표절(self-plagiarism)과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는 개념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학술단체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복게재에는 자기표절과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자기표절과 이중게재를 포함한 중복게재는 남의 글을 훔쳐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의 표절과는 구분되어야 하지만, 자신이 발표한 과거 저작물의 일부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은 출판사와 맺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이자 새로이 발표하는 글의 학술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⁴³⁾

또한 학술적 가치가 크지 않은 논문을 손쉽게 만들어내어 논문 실적을 부풀리는 부당한 행위로 연구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교육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는 대신 “부당한 중복게재”를 2015년부터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였다. 교육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 제1항 제5호에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연구윤리지침」에는 “중복게재”를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하다”는 의미는 비교되는 두 학술적 저작물이 말 그대로 거의 똑같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논문 제목이 조금 바뀌었을 뿐 내용이 같거나, 서론이나 결론 부분의 일부가 조금 바뀌었을 뿐 나머지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⁴⁴⁾ 이러한 경우를 통상적으로 중복게재 중 “이중게재”라고 부른다. “실질적으로 유사한”이라는 말은 자신의 이전 학술적 저작물과 이후의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 방법론, 연구 구조, 내용, 논의(토론), 결론 등에서 거의 유사하다(substantially similar)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용의 일부를 바꾸었거나, 새로이 추가했다고 해도 연구자의 논지와 결론 등이 비교되는 두 저작물에서 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학술적 저작물을 의미 있게 해주는 몇 가지 주요 부분(가설, 표본 수, 연구 방법, 결과, 논의, 결론 등)에서 차이가 없이 거의 유사하다.⁴⁵⁾ 자신의 이전 논문에 기술된 서론 일부분을 새로운 후속 논문에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시 사용하는 경우, 즉 전체 논문의 내용 중 다시 사용한 부분이 적은 경우를 통상적으로 중복게재 중 자기표절이라고 한다.

43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30.

44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06.

45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106.

참고문헌

법령 및 관련 규정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 일부개정)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2009. 9., 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 규칙」(2021.8.9., 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타법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7588호, 2020.12.8., 일부개정)

국내 및 해외 문헌

- 한국과학기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사례 2020』, 2020.
Appearance Publishers, 『APA/MLA guidelines: Concise Guide to APA and MLA Styles』, 202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2018.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집필진	이원용 연세대학교 이경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해진 세명대학교
기획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연구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발행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문의처	인재교육사업실 전문역량교육팀(sjchoi@kird.re.kr)
발행일	2022년 3월

디자인 및 인쇄 (주)다원기획 044-865-8115



